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칙

[전문제정 2019. 01. 11]

전 문

11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사학 동국대학교의 미래융합대학은 격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현장의 실무를 익힌 인재들과 학문의 접점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모여 2017년 13번째 단과대학으로 출범하였으며,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적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그 깊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. 미래융합인은 자유로운 배움의 전당에서 성실, 근면하여본인의 학업과 나아가 사회적,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정진해야 한다.

미래융합대학 학생회는 회원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대표 기구로써 그 역할을 위한 학생회칙을 2019년 01월 11일에 제정한다.

< 구 성 >

전문

제 1장 총칙

제 2장 학생총회

제 3장 학생대표자 회의

제 4장 대의원회

제 5장 정 · 부 학생회장 및 임원

제 6장 운영위원회

제 7장 집행부

제 8장 과(전공) 학생회

제 9장 학생회 간부의 소환 및 탄핵

제 10장 재정

제 11장 선거 및 선거관리 위원회

제 12장 회칙의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<명칭>본회는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생회(이하 본회라 한다.)라 칭한다. 제 2 조 <목적>본회는 회원간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서 미래융합인의 자부심고취, 회원의 학업환경 개선과 나아가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, 봉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제 3 조 <사업>본회는 전조(前條)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- 1. 회원의 교육환경, 생활환경 등 제반 복지 문제개선에 관한 사업
- 2. 재직자전형으로 특화된 단과대학의 교내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업
- 3. 회원 각각의 경력개발 증진과 각 학과(전공) 간 친목, 교류 활동에 관한 사업
- 4. 회원의 자주적 삶의 쟁취를 위한 조건 창출 및 그 실현에 관한 사업
- 5.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 4 조 <회원의 자격>본회의 회원은 본 단과대학 재학생으로 한다. (단, 학생대표자 등 본 회 운영에 필요한 회원을 제외하고 휴학 상태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

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)

제 5 조 <회원의 권리와 의무>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- 1.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- 2. 본 회의 운영에 대한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갖는다.
- 3. 본 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.
- 4. 본 회의 학생대표자에 대한 불신임권 (소환, 파면권)을 갖는다.
- 5. 본 회의 회칙, 결의 사항의 준수와 회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 제 6 조 <본 회의 구성>본 회는 회칙 제 2 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생총회, 학생대표자 회의, 대의원회, 정·부 학생회장, 운영위원회, 집행부 각 과 학생회 동의기구를 둔다.

제 2 장 학 생 총 회

- 제 7조 <지위>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.
- 제 8조 <구성>학생총회는 본 대학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.
- 제 9조 <권한>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갖는다.
 - 1. 회칙의 개정, 폐지의 의결권
 - 2. 정 · 부 학생회장의 탄핵소추 및 파면권
 - 3. 사업보고 및 사업 계획안의 의결권
 - 4. 예산 및 결산의 의결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의 의결
- 제 10조 <의장>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.(단, 정, 부학생회장이 모두 탄핵소추중 이거나 궐위 시에는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.)

제 11조 <소집>

- 1. 학생총회는 학생 대표자 회의의 요구, 운영위원회의 요구,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소집한다.
- 2. 학생충회의 소집은 충회 3~4일전까지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3. 제 11조 제 1항에 준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(단,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생회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.)
- 4. 학생총회의 소집일 공고 후 해당 일의 참석자가 전체 회원의 1/4이하일 경우 해당 총회의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.
- (정족수 미달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소집을 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.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.)
- 제 12조 <의결>학생총회는 회원 1/4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단, 정, 부학생회장 탄핵 시 1/4이상의 참석과 2/3의 찬성으로 한다.)

제 3 장 학생대표자회의

- 제 13조 <지위>학생대표자 회의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본 회의 의결기구이다.
- 제 14조 <구성>학생 대표자 회의는 정 · 부 학생회장, 각 과(전공) 정 · 부 학생회장,
 -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(단, 특별기구 의원, 집행부, 각 학과 대표는 의결권을

갖지 못하고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.)

(직접투표로 인해 당선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권한을 부여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일 경우 발언권만 인정,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.)

제 15조 <의장>학생회장이 맡는다. (단, 학생회 정·부 학생회장이 모두 탄핵중이거나 궐위 시에는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.)

제 16조 <권한>

- 1. 회칙 개정안의 발의권 및 의결처
- 2.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
- 3. 운영위원회에서 검토, 조정, 제출된 예결산의 심의 의결권
- 4. 운영위원회에서 검토, 조정,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심의 의결권
- 5. 학생 경비 책정에 대한 승인권
- 6. 학생회 정, 부회장의 탄핵소추권
- 7. 학생회 특별기구 신설 및 해체에 대한 의결권
- 제 17조 <의결>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. (단, 학생회 정부학생회장 탄핵소추 의결의 경우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)
- 제 18조 <소집> 본 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의 요구, 대의원회의 요구 또는 구성원의 1/4이상 의 요구로 학생회장이 소집한다. (단, 학생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 의 장이 소집한다.)

제 19조 <효력> 학생총회가 소집되지 않을 시에 학생총회의 권한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. 제 20조 <회의> 필요 시 회의를 갖고 재 18조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.

제 4 장 대 의 원 회

제 21조 <지위>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입법 감사 기구이다.

제 22조 <구성>

- 1. 대의원회는 본 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.
- 2. 대의원은 직접 선거에 의하여 각 과(전공) 학년 1인씩으로 한다. (단, 과 학생회 정부회장은 이를 겸임할 수 없다.)

제23조 <임기> 대의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. (단, 학과/학부의 실정상 한 학기로 할 수 있고, 1학년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한다.)

제 24조 <의장>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대의원회 중앙위원이 된다.

제 25조 <대의원 회의 업무 및 권한>

- 1. 회칙 개정안의 발의권
- 2. 학생회비 인출에 대한 승인권
- 3. 학생회 정,부회장의 탄핵 소추권
- 4. 본 회 각 집행부서장의 해임 의결권
- 5. 본 회 간부에 대한 출석 요구권
- 6. 학생 총회 소집 요구권
- 7. 총 대의원회 참석권
- 8.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
제 26조 <소집>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
- 1.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6월, 9월과 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. (단, 보궐 선거 등의 대의 원회 운영에 중대한 사안으로 정기총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의장이 판단할 시, 재적 대의 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)
 - 2.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/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,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4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. (단, 긴급한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소집한다.)

제 27조 <의결>

- 1.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. 제 25조의 제 1, 4, 5, 7 항은 在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제 5 장 정 · 부 학 생 회 장 및 임원

제 28조 <지위>

- 1.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의 장이 된다.
- 2. 부 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 그것을 승계한다.
- 제 29조 <임기> 학생회장과 부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 해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다.

제 30조 <업무 및 권한>

- 1. 집행부서장을 추천하여 임명한다.
- 2. 학생총회, 운영위원회와, 학생대표자회의, 집행부를 소집, 그 업무를 추진한다.
- 3. 중앙 특별 기구 단과대학 위원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 (단, 운영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.)
- 4. 학생총회,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된 각 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.
- 5. 집행부서장의 해임권을 가지며 해임 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6. 기타 직무에 관한 사안을 집행한다.
-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해 파면, 경질, 정직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제기 할 수 있다.
- 비상 운영위원회, 비상 집행부회의 소집권을 갖는다.
- 학생회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 편성 회칙개정의 발의권을 가지며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.

제 31조 <학생회 임원 구성>

- 1. 학생회의 임원 구성은 우리 단과대학의 재학 중인 자로 공개 또는 정,부 학생회장의 추천으로 선발한다.
 - 2. 선발 된 자는 소명을 가지고 성실히 학생회 운영에 있어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활동하며 이에 위반되는 자는 본 회칙에 의거 임원활동 중지 등 제명될 수 있다.
 - 3.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생회장과 부 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되며, 매년 구성되는 학생회의 임원으로 재임할 수 있다. 단, 임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에 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.

제 6 장 운 영 위 원 회

제 32조 <지위>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과 집행에 관한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. 제 33조 <구성>

- 1. 운영위원회는 정,부학생회장, 각 과(전공)학생 회장, 대의원장, 서기 1인으로 구성된다.
- 2. 사업추진 보고 및 결과 보고 등 경우에 따라 해당 집행부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 (단, 적극적 회의참석 불가하며 의결권은 없다.)

제 34조 <업무 및 권한>

- 1.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, 조정, 심의하여 학생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.
- 2. 회칙 개정안의 발의권
- 3.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 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.
- 4. 학생총회, 학생 대표자회의,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5. 각 집행부서장의 소환 및 집행부 사업보고 요구권
- 6. 학생회 각 기구의 업무조정과 의견사항에 대한 재심 요구권

제 35조 <소집>

- 1.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로 하고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.
- 2. 임시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.
- 3. 운영위원회 소집 시 천재지변 및 운영위원회장이 인정한 합당한 사유를 제외 하고 소집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.
- 4. 본 조 3호에 해당하는 합당한 사유 외 2회 불참 할 경우 해당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 서 제외한다.
- 5. 의장은 회의 소집일 전까지 운영위원 전원에게 일시 및 장소, 안건 등을 통지한다. 제 36조 <의결>
 - 1.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2/3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.

제 7 장 집 행 부

제 37조 <지위>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제 38조 <구성>

- 1. 집행부는 정, 부학생회장과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다.
- 2. 각 부서장은 업무를 위해서 차장과 부원을 둘 수 있다. (단, 차장과 부원은 학생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)

제 39조 <자격>

- 1. 미래융합대학 소속 회원일 것
- 2. 부서의 장의 경우 2학기 이상 재학할 것
- 3. 징계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

제 40조 <선출방법>

1. 학생 대표자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.

제 41조 <의무>

1. 본 회의 발전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회원의 학업환경 개선 및 발전에 기여, 봉사 하여야 한다.

2. 집행부의 권한은 오로지 본 조 1항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목적 외의 어떠한 권한 행사도 할 수 없다.

제 42조 <업무 및 권한>

- 1. 학생총회, 학생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.
- 2. 본 회의 일상적인 사업을 집행한다.
- 3. 제반 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. (단, 학생회장은 필요에 따라 학생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축소 또는 신설할 수 있다.)
 - 1) 총무부 : 본 회의 서무, 회계에 관한 제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.
 - 2) 기획부 : 본 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기획, 조정을 담당한다.
 - 3) 홍보부 : 본 회 활동에 대한 제반 홍보 및 선전사업을 담당한다.
 - 4) 사무부 : 본 회의 학술활동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 - 5) 대외협력부 : 각종 지역사회 활동과 타 대학과의 교류 및 외부 소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43조 <자격의 박탈>

- 1. 본 회칙 2조 내지 41조의 목적 및 의무에 반하여 집행부의 권한을 남용한 때
- 2. 징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
- 3. 본인이 집행부원의 자격 박탈을 요청할 때
- 4. 본 조의 각 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
제 8 장 과(전공) 학 생 회

제 44조 <구성> 과(전공) 학생회는 각 학과(전공)의 재학생으로 구성되며 그 활동을 위해 독자적인 조직을 갖는다.

제 45조 <정·부회장 및 임기> 과(전공) 학생회 정, 부회장은 과 학생회원들 간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학생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이 된다. 선출된 정, 부회장의 임기는 해당 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하며 연임에 관련된 사안은 각 과 회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 단, 위임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어떠한 효력은 없다.

제 46조 <업무> 과(전공) 학생회는 과 학생회 고유의 업무 및 각 과 학생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 47조 <재정> 과(전공) 학생회의 재정은 과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학과 별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, 학과 구성원의 1/10 또는 학생운영위원회의 소명 요구가 있을 시 학생운영위원회 등 회의에서 소명해야한다.

제 48조 <회칙> 과(전공) 학생회는 본 회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갖는다.

제 49조 <권한> 과(전공) 학생회는 단과대학 총학생회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인정받으며 이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. 단, 본 회칙에서 정한 단과대학의 개선, 시행 사업 등 중요사안 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제 9 장 학생회 간부의 소환 및 탄핵

제 50조 <징계의 내용> 본회의 정부회장 및 기타 학생회 간부가 다음의 각 학에 해당하는

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취할 수 있다.

- 1.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
- 2. 본 회의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하였을 경우
- 3. 본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맡은 직책 및 지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

제 51조 <회칙 위반에 대한 탄핵>

- 1. 전조 제 1항, 2항에 대하여 학생회 간부가 위반하였을 경우 학생대표자 회의 및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소추를, 학생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.
- 2. 탄핵 발의는 학생총회 발의에 준하며 학생총회에서 재적 회원 1/4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장 재 정

제 52조 <재정>

- 1.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.
- 2. 본 회의 재정은 본 회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 53조 <회계 년도>

- 1.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2. 전항의 회계 년도는 2기로 나누고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.

제 54조 <예산>

- 1. 예산은 "예산분배를 위한 소위원회"의 조정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한 것을 집행하다.
- 2. 예산은 예산안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장부에 지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 55조 <결산보고>

- 1. 매 학기 별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.
- 2. 결산보고는 학생회 게시판 등 공적인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..
- 3. 본 회의 회원 1/10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언제든지 공개하여야 한다.

제 11 장 선거 및 선거 관리 위원회

제 1 절 선 거

제 56조 <선거권>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하고, 그 자격이 정지되 거나 제명되지 않은 자에 한한다.

<피선거권> 피선거권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- 1. 학생회 정 · 부 학생회장
- 1)본 회의 회장으로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당 해 학기 재학중인 자로 한다.
- 2)본 회의 회원 1/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- 2. 대의원회 의장은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당해 학기, 재학 중인 자로 한다.
- 3. 대의원은 당 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.
- 4. 과 학생회장은 자치회칙에 따른다.
- 제 57조 <선거방법> 본 회의 선거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선거에 의한다.
- 제 58조 <선거시기>

- 1. 정· 부 학생회장, 대의원회 위원장 및 대의원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한다. (단, 1학년 대의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- 제 59조 <선거관리 위원회>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선거관 리 위원회를 둔다.
- 제 60조 <임기>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 간부의 임기는 선거실시 차기 년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.
- 제 61조 <보궐선거> 정,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, 학생총회에서 탄핵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그리고 학생회장의 업무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대의원회 의장이 대행한다.
- 제 62조 <기타> 기타 선거의 세부사항은 선거 시행세칙 및 각 지구별 자치회칙에 따른다.

제 2 절 선거방법

제 63조 <정 · 부 회장>

- 1. 본회 정부회장은 선거의 전 과정에 하나로 참여하고 본회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 과반수 투표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(단,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회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이 결정된다.)
- 2.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. (단, 2차 투표는 5일 이내에 실시한다.)
- 제 64조 <대의원회 의장, 과 학생회장>대의원회 의장, 과 학생회장의 선거 방법은 제 61조 를 준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각 자치회칙에 따른다.

제 65조 <후보자 등록>

- 1. 본회 정부회장의 입후보자는 투표일 15일 전까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.
- 2. 등록 구비서류를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, 재학증명서 1부, 서약서 1부, 추천서 1부 (1/10 이상의 추천) 로 한다.
- 제 66조 <선거운동> 선거운동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에 따르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결정한다.
- 제 67조 <선거인 명부> 선거인 명부는 투표개시 3일 전까지 작성, 완료하여야 한다.
- 제 68조 <선거공보>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, 기호, 소속학과, 성명, 약력, 소견을 기재한 선거공보를 투표일 7일전까지 작성, 부착하여야 한다.

제 3 절 선거관리 위원회

- 제 69조 <구성> 선거관리 위원회는 (이하 선관위라 함)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대의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.
- 제 70조 <구성의 시기>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7일 전까지 구성을 마쳐야 한다.
- 제 71조 <업무 및 권한> 선관위는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 - 1. 입후보자의 자격(피선거권)심사
 - 2. 선거인 명부 작성
 - 3. 선거공보의 부착
 - 4.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
 - 5. 선거 및 당선의 무효여부 심사 및 당선인의 당선공고와 당선 확정 공고

- 6. 재선 여부 결정
- 7. 선거의 중단 및 연기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선거 업무와 권한에 관한 제반 사항
- 제 72조 <선거일 공고> 선관위는 본 회 정부회장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한다.
- 제 73조 <개회 및 의결>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한성으로 의결한다. (단, 당선의 무효 및 입후보자 자격 박탈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)
- 제 74조 <선관위 해체> 선관위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에 관한 제소가 없는 경우 당선 확정 공고 후 자동적으로 해체된다.
- 제 75조 <선관위의 피선거권> 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.
- 제 76조 <선거시행세칙> 선관위는 본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시행세칙을 정한다.

제 4 절 투표개표 및 당선공고

- 제 77조 <투표 및 개표>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관위인 3인 이상이 관리하고 개표는 선관위 위원장의 임석하에 진행한다.
- 제 78조 <참관인> 각 입후보자는 표 개표장에 2인 이하의 참관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.
- 제 79조 <무효표>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.
 - 1.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
 - 2.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
 - 3. 투표용지에 필요한 표식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
 - 4. 기타 선관위에서 무효표라고 정한 표
- 제 80조 <제소>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 내에 선관위에 제소할 수 있다.
- 제 81조 <당선공고>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선 인을 공고해야 한다.
- 제 82조 <당선확정공고> 선관위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이 지난 후까지 선거에 관한 제소가 없을 경우 당선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.

제 5 절 재선거

제 83조 <재선거 해당사항>

- 1. 당선인이 없을 때
- 2. 선거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
- 3. 당선인이 임무개시전에 사퇴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(단, 기타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은 선관위에서만 행한다.)
- 제 84조 <재선거 시기> 재선거는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후 15일 이내에 실시한다.

제 12 장 회칙의 개정

제 85조 <제안> 회칙개정은 재적 대의원의 1/3이상의 발의,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제안한다. 제 86조 <의결>

- 1. 발의 시 학생회장 또는 대의원 의장은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- 2.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학생총회, 학생대표자회의,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. (단, 대의원회는 부분개정만 의결할 수 있다.)
- 제 87조 <공포> 확정된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, 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않을 시에는 대의원 의장이 공포한다.
- 제 88조 <효력>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
[이상 총 10장 학생회칙 제정]

